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3호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9 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제안 이유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 대규모점포 관리방안을 추가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을 추가함(안 제4조).

다.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u>&lt;신 설&gt;</u>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u>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생략) 1. ~ 5. (생략) <u>&lt;신 설&gt;</u>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6.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u>		
6. (생략) ② ~ ⑩ (생략)		7. (중전 제6호와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생략) <u>&lt;신 설&gt;</u>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관계 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황인호	황인호	
2	박영채	박영채	
3	신민학	신민학	
4	박재호	박재호	
5	장기현	장기현	
6	가동성	가동성	
7	이리권	이리권	
8	김정환	김정환	
9	조재서	조재서	
10			
11			
12			
13			
14			
15			
16			
17			